

의안번호	2208207
의 퇴 인	진종오 의원
회 답 일	2025.05.14.
추계번호	25C0890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(교원보호공제사업)	(제2항)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제2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 지원</u> 3. (현행과 같음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(교원보호공제사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
 -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교원지위법”) 제22조에 따라 전국 17개 시·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음¹⁾
 - － 「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」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은 분쟁조정, 심리상담비 지원, 민·형사소송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됨
- * [참고자료] 「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」 주요 내용

1) 「교원지위법」

제22조(교원보호공제사업)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(이하 “교원보호공제사업”이라 한다)을 운영·관리할 수 있다.

- 현재 각 시·도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²⁾,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해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³⁾

□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공제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된 신규 사업이 편성되어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한다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사업 수혜자인 교원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, 기존에 유사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함
 -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정신질환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나, 현시점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교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또한 관련 법령⁴⁾에 따라 각 시·도교육청의 유사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
 -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마음선(先) 개인심리상담⁵⁾, 마음생(生)개인심리상담⁶⁾, 마음행(行) 개인심리상담 및 초기 치료비용 지원⁷⁾ 등 사업을 운영하고

2) 「교원지위법」

제22조(교원보호공제사업) ③ 교육감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

3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5조(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)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에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제24조(공제회의 재정)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52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4) 「교원지위법」

제1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5)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8회(1회 50분) 지원

6)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지원이 시급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마음 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10회(1회 50분) 지원

7) 개인 심리상담 지원을 받은 교원 중 자살위험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하여 추가 심리상담 5회와 정신건강

있고,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온라인 심리 검사 이후 전문가 상담 및 전문 치료 연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을 운영하고 있음

- 참고로,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를 규정한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이 2025.9.19. 시행될 예정임⁸⁾

□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의학과 치료비용 5회(각 50만원 이내) 지원

8) 「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2396호)

제29조의2(교원의 정신건강 증진)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정신건강증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정신건강 상담·검사·치료비용 지원
 2. 정신질환 예방·치료·재활 프로그램 운영
 3.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
 4.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
 5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「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」 주요 내용

구분	보상내용	공제금 지급한도
배상책임	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(민사상 합의금 포함)	사고당 2억원 (소 제기전 합의 시 사고당 1억원)
민·형사상 소송비용	학생·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· 형사 소송 비용(소제기 포함)	심급별 660만원 수사단계 330만원
상해치료비· 심리상담비	치료 및 요양비 심리상담비	치료·요양비: 사고당 200만원 심리상담: 15회
재산상 피해비용	휴대폰 훼손 등 비용	사고당 100만원
위협대처서비스	폭행·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 경호	사고당 20일
분쟁조정서비스	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	한도 없음

자료: 교육부